

## 기획개발 계약서

- 영화 전문 투자/배급사 -

(투자사의 주소)에 주소를 둔 투자사명(이하 ‘투자사’라 한다)과 (기획개발자(사)의 주소)에 주소를 둔 기획개발자(사)명(이하 ‘기획개발자’라 한다)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기획개발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기획개발자가 영화화하려는 본 계약 제2조의 계약 대상물(이하 ‘본건 기획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사가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를 결정하고 기획개발자가 기획개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사와 기획개발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에 있다.

### 제2조(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 기획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사항은 투자사와 기획개발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1) 명 칭 : (시나리오 제목) (가제)
- (2) 각본 / 각색 : (각본 및 각색 작가명)
- (3) 감 독 : (확정된 감독명, 미확정시 ‘미정’)
- (4) 현재개발상황 : (기획개발의 현재 단계, 제3조 2항 참조)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개발’이란 아이디어나 원안 등 영화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견, 착상, 기획하고 영화 제작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 등을 개발·완성하여 배우와 감독의 캐스팅 등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 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총칭한다.
- (2) ‘기획개발의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작성·확정되는 원안,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등을 ‘각 단계별 결과물’ 또는 ‘결과물’이라 한다.
  - ① 원안 단계 :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단계를 말한다.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시놉시스나 소설, 웹툰 등의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트리트먼트 단계 : 단순한 스토리라인이 아닌 플롯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의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가 드러나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이 서술되는 시나리오 이전 단계를 말한다.

- ③ 1차(초고) 시나리오 단계 :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썬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한,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집필하는 단계를 말한다. 시나리오 초고가 집필된 이후의 단계는 각색 시나리오 단계로 본다.
  - ④ 각색 시나리오 단계 : 1차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 및 촬영에 보다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각색의 횟수에 따라 2고, 3고, 4고 등으로 구분한다.
  - ⑤ 최종 시나리오 단계 :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합의한 각색 횟수를 거친 이후, 주연 배우 캐스팅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본건 기획물의 시나리오를 최종 수정·확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 (3) ‘기획개발비’란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을 위하여 투자사가 기획개발자에게 투자하는 금원으로,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상호 합의한 금액을 말한다.
- (4) 본건 기획물의 ‘저작권’ 대상에는 본건 기획물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 단계별 결과물 및 이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정보 등 일체의 산물이 포함된다.
- (5) ‘저작재산권’이란 본건 기획물을 영화로 제작할 권리를 포함하여 본건 기획물에 대한 복제권, 출판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본건 기획물 이용에 관한 모든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 (6) ‘투자우선권’이라 함은 본건 기획물을 영화로 제작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00)개월(또는 년)로 한다. 다만, 투자사와 기획개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기획개발비의 지급)**

- (1) 투자사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을 위하여 기획개발자가 제출한 별첨 1의 ‘예산서’에 따라, 기획개발자에게 기획개발비 금 (한글 금액)원(₩(숫자))을 기획개발자가 지정하는 제2항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 (2) 기획개발자가 기획개발비의 독립된 집행·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은행 계좌(이하 ‘프로젝트 계좌’라 한다)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단, 투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획개발자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프로젝트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은행명 : (은행명)
  - ② 계좌번호 : (계좌번호)
  - ③ 예금주 : (예금주명 또는 회사명)
- (3) 투자사는 아래 일정에 따라 기획개발자에게 기획개발비를 지급한다.
  - ① 1차 지급시기 - 금 (한글 금액)원(₩(숫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2차 지급시기 - 금 (한글 금액)원(₩(숫자)) ( 예; 1차 각본 완료 등 ) 지급

- ③ 3차 지급시기 - 금 (한글 금액)원(₩(숫자)) ( 예; 각색 수정 완료 등 ) 지급
- ④ 4차 지급시기 - 금 (한글 금액)원(₩(숫자)) ( 예; 주연배우 계약체결 등 ) 지급

(4) 투자사는 각색 시나리오 단계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기획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다. 추가 기획개발비의 액수, 사용 용도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 제6조(기획개발의 진행)

- (1)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00)일 이내에 투자사와 협의하여 제4조 및 제10조의 사항 등이 반영된 별첨 2의 ‘단계별 진행계획’을 작성하여 투자사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기획개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2)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 방향, 스토리 구성, 작가 선정, 각 단계별 결과물의 확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의사 결정하고, 서로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 최종 의사 결정은 (투자사 또는 기획개발자)가 한다.
- (3) 기획개발자는 별첨 2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 단계별 결과물을 투자사에게 제출하고, 투자사는 각 단계별 결과물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00)일 이내에 수정 여부, 구체적인 수정 사항,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검토의견을 기획개발자에게 전달한다. 단,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상호 합의 하에 제출 또는 전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 (4)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 단계별 결과물을 수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투자사와 별도로 협의한 일정 내에 수정된 결과물과 함께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서 투자사가 결과물을 확정하는 경우) 수정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되, 투자사의 검토의견이 각 사항 별로 충분히 반영되거나 기획개발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사의 재수정 요구 횟수 및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기획개발자가 제4항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기간 내에 수정된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면 투자사의 재수정 요구로 인하여 별첨 2에서 정한 일정이 연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 (6) (제2항에서 기획개발자가 결과물을 확정하는 경우) 수정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되, 투자사의 재수정 요구가 사회 상규 및 영화계 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하지 않거나 재수정 요구로 인하여 별첨 2에서 정한 일정이 지나치게 연장될 위험이 없다면 투자사의 재수정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계약의 체결 등)

- (1)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 체결 전 원저작물 사용허락 계약, 각본/각색 시나리오 작가 계약, 감독/프로듀서 계약 등 본건 기획물과 관련된 계약(이하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이미 체결한 경우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관련 계약서의 사본 일체를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계약’의 체결에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의 해당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에 기획개발의 착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투자사와 기획개발자 사이에 협의된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계약서의 사본을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기획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관련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에 각 계약서의 사본을 투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획개발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대상자의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사전에 투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관련 계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조건과 동일성을 유지하여 본건 기획물과 관련된 투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기획개발비의 사용)**

- (1) 기획개발자는 기획개발비를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과 관련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기획개발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2) 기획개발자는 별첨 1의 예산서 내에서 각 항목간 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와 사전 합의하여 전용 여부를 결정한다.
- (3) 기획개발자는 기획개발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투자사에게 증빙자료 사본이 첨부된 기획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투자사는 제3항의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획개발자에게 기획개발비 사용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획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기획개발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획개발비의 사용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5) 기획개발자는 제4항의 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 투자사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투자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기획개발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비용은 기획개발자의 귀책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기획개발자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투자사가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6) 기획개발자는 기획개발의 완료 시를 기준으로 기획개발비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00)일 내에 동 금액을 투자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제9조(기획개발의 중단 등)**

- (1) 투자사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투자사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하여 본건 기획물에 대한 기획개발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이 경우 투자사는 기획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개발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획개발자는 그때까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획개발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고, 투자사는 그때까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기획개발비를 기획개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기획개발자는 제4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획개발자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하여 본건 기획물에 대한 기획개발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 ① 이 경우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이율) %의 이자를 투자사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기획개발자가 전부 상환한 날로부터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기획개발자가 동 금액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을 양도, 사용허락,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못하고 기획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투자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 ③ 기획개발자는 제1호의 통지일로부터 본 계약이 종료된 후 (00)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와 본건 기획물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등 이상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3)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등 상호간 필요 및 판단에 의하여 본건 기획물에 대한 기획개발의 중단을 결정하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 종료일부터 (00)일 이내에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00)%를 투자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합의하여 기획개발비의 상환 대신 다른 기획물 또는 영화에 대한 투자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기획개발의 완료)

- (1) 기획개발자는 제4조의 계약기간 내에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 (2)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계별 결과물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0]회의 각색을 거친 최종 시나리오와 주요 배역에 대한 캐스팅 계획 등이 투자사에게 제출된 때 기획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3) 투자사는 제6조에서 정한 협의를 거쳐 제2항과 같이 최종 시나리오 등이 투자사에게 제출된 이상 기획개발의 완료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 제11조(투자 우선권 행사)

- (1) 투자사는 기획개발자가 영화화하는 본건 기획물에 대한 투자우선권을 가진다.
- (2) 투자사는 제10조 제2항의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기획개발자에게 투자우선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사가 위 기간 내에 투자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투자우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기획개발자는 투자사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투자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본건 기획물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고, 투자 권유·유치 및 이를 위한 접촉이나 교섭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사의 투자우선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투자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 (1) 투자사가 본건 기획물에 대한 투자우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건 기획물의 영화화에 대한 일체의 투자 권유·유치 등을 할 수 없다.
- (2)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제11조 제2항의 투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본건 기획물로 제작할 영화의 투자 및 배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별첨 3의 기본 원칙이 반영된 투자(및 배급)계약 등을 체결하며, 기획개발자는 투자(및 배급)계약 체결을 위해 투자사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의 기한 내에 투자(및 배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사는 투자우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단, 투자사와 기획개발자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투자사가 기획개발자에게 지급한 기획개발비는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의 제작비에 항목별로 산입하며 투자사가 지급할 제작비 중 해당 금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한다.

#### **제13조(투자거부시 처리)**

- (1) 투자사가 본건 기획물에 대한 투자우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획개발자는 제11조 제2항의 투자 포기 통지일 또는 투자 포기 간주일(이하 ‘부결일’이라 한다)로부터 (00)일 이내에 기획개발비의 (00)%를 투자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합의하여 기획개발비의 상환 대신 다른 기획물 또는 영화에 대한 투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 기획개발자가 제1항의 금액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을 양도, 사용허락,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못하고 기획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투자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 (3) 기획개발자는 부결일부터 제3자와 본건 기획물의 영화화를 위한 투자 권유·유치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 (4) 기획개발자는 제3자와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기획개발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본건 기획물의 결과물 및 감독, 출연배우, 스태프 구성, 예산 등의 내용이 투자사에게 제공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② 기획개발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제1호의 내용이 투자사에게 기준에 제 공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기획개발자는 제3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투자우선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재청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사가 투자우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획개발자는 제3자와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 투자사의 투자우선권 포기로 인하여 기획개발자가 제3자와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개발자는 제1항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투자계약 체결 후 (00)일 내에 투자사에게 기획개발비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획개발자의 권리와 의무)**

- (1) 본 계약의 체결은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투자사의 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사용허락,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 (3)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과 영화 제작을 자신의 책임 아래 완료하여야 하고, 투자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과 영화 제작을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4)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 및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을 득하여 본 계약에 의한 투자사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 및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법적 권리 침해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투자사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 (6)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기획개발비 이외에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및 현물의 투자 또는 지원이 있을 경우 투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투자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작품 크레딧 명기)**

투자사가 본건 기획물에 대하여 투자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사는 본건 기획

물로 제작되는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투자자로서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명기 내용 및 방법은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투자계약에서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양도)**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본건 기획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 **제17조(진술과 보증)**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의 기획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를 보증 한다.

- (1) 본건 기획물 및 그 결과물은 기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표절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타인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 (2)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기획개발자가 투자사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 및 답변은 모두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며 투자사의 본 계약 체결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바가 없다.
- (3) 본건 기획물을 목적으로 하거나 본건 기획물과 관련된 분쟁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획개발자가 알고 있는 한, 그와 같은 분쟁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 (4) 기획개발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협력 및 승인을 받았으며, 청산, 파산,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 (5)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권리 및 권한이 있고, 제3자로부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 및 세무업무의 협조)**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상의 업무를 위해 상호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 **제19조(비밀 유지)**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 등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의 투자사와 기획개발자에는 그의

각 임·직원이 포함된다.

### 제20조(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는 경우.
  - ② 회생절차, 파산 또는 청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③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경우
-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시정을 최고하는 서면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사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기획개발자가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사와 사전 합의 없이 정해진 일정 내에 각 단계별 결과물을 투자사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② 기획개발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획개발비를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③ 기획개발자가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사의 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사용허락, 담보제공 등 처분한 경우
- (4) 투자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에게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일체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사 역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5) 기획개발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기획개발자는 그 때까지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연(이율) %의 이자를 투자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기획개발자가 동 금액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기획개발자는 투자사의 동의 없이 본건 기획물을 양도, 사용허락,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못하고, 기획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기획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투자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 (6) 본 조의 해제 및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21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지역명)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 (3) 본 계약의 해석과 소송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 제22조(통지)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투자사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기획개발자에 대한 통지

( 주 소 )  
( 이메일 )

### 제23조(계약의 효력)

-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 (2) 모든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 (3)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 날인한 문서로만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 일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투자사와 기획개발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투자사

기획개발자

印

印

#별첨 1. 기획개발비 사용 내역서 또는 항목별 예산서(투자사의 양식)

#별첨 2. 기획개발 단계별 진행 계획서(예시)

#별첨 3. 투자 및 배급 계약에 대한 사전 약정(예시)

#별첨 2.

## 기획개발 단계별 진행 계획서(예시)

예시) 트리트먼트 1회, 각본 1회, 각색 3회 작업시

- |     |                             |             |                   |
|-----|-----------------------------|-------------|-------------------|
| 1.  | 계약체결일 ~ 0000년 00월(00개월)     | 트리트먼트 작업    | '기획개발자'           |
| 2.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트리트먼트 검토    | '투자사'             |
| 3.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트리트먼트 수정 협의 | '투자사',<br>'기획개발자' |
| 4.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개월) | 각본 작업       | '기획개발자'           |
| 5.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본 검토       | '투자사'             |
| 6.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본 수정 협의    | '투자사',<br>'기획개발자' |
| 7.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개월) | 각색 1고 작업    | '기획개발자'           |
| 8.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색 1고 검토    | '투자사'             |
| 9.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색 1고 수정 협의 | '투자사',<br>'기획개발자' |
| 10.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개월) | 각색 2고 작업    | '기획개발자'           |
| 11.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색 2고 검토    | '투자사'             |
| 12.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각색 2고 수정 협의 | '투자사',<br>'기획개발자' |
| 13.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개월) | 각색 3고 작업    | '기획개발자'           |
| 14.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00일)  | 투자 우선권 검토   | '투자사'             |
| ... |                             |             |                   |

## 투자(및 배급) 계약에 대한 사전 약정(예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약정한다.

### 1. 독점적 수익창출 기간

‘투자사’는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하여, 위 영화의 최초 상영일로부터 [ ]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 2. 수익 배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사’는 ‘기획개발자’에게 순이익의 (00)%를 수익지분으로 지급한다.

### 3. 배급수수료

영화관배급수수료는 영화관상영 수익의 (00)%, 해외수출배급수수료는 해외수출수익에서 해외수출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00)%로 한다.

### 4. 관리수수료

관리수수료는 총제작비의 (00)%로 한다.

### 5. 크레딧

‘기획개발자’는 본건 기획물로 제작되는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작’이라는 크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위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기 방법 등은 ‘투자사’와 ‘기획개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